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06

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유영하·권성동·김병기

김성원 · 김재섭 · 박준태

서천호 • 유용원 • 이헌승

인요한 • 우재준 • 최수진

의원 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.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
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%로의 임박한 실정임.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

대하려는 것임. (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)

법률 제 호
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의17제2항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 제48조제4항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40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공인 회계사가 제40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의17(징계) ① (생 략)	제40조의17(징계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	②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<u>3년</u> 이	<u>5년</u>
지나면 할 수 없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징계) ① ~ ③ (생 략)	제48조(징계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	
터 <u>3년</u> 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	<u>5년</u>
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.	